

글로벌 투자 파트너-

**MIRAE ASSET**  
미래에셋대우

# 미래에셋대우

## 2017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

2018년 3월 6일

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

대표이사 최 현 만 

## 1. 보수위원회

### 가. 총괄

미래에셋대우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·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

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「보수위원회규정」을 두고 있으며, 미래에셋대우 『이사회규정』 제 12 조 ①을 근거로 운영되어왔습니다.

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위원 변경 시까지 연속하여 재임이 가능합니다. 황건호 위원은 2018 년 3 월 임기 만료이며 현재(2017 년 12 월말)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21 개월이며, 김병일 위원은 2018 년 3 월에 임기 만료이며 현재(2017 년 12 월말)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23 개월 입니다.

또한 「보수위원회규정」 제 8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의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.

## 나. 구성

### 1) 총괄

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미래에셋대우 「보수위원회규정」 제 3 조에 의거 위원의 구성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하되,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.

2017 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총 3 인(황건호,김병일,최현만)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 인(황건호,김병일)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황건호 이사가 보수위원회의 대표로 있어,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.

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[미래에셋대우 2017 년 1 월 ~ 3 월 23 일]

성명	직명	사외이사 여부	금융회사 등 출신여부	약력
김병일	이사	사외이사	무	생략 (하단 표에 기재)
황건호	이사	사외이사	유	생략 (하단 표에 기재)
홍성일	이사	사외이사	유	GK 파트너스 부회장(비상근)〈'12.6 월~〉, 대우증권 사외이사〈'10.6 월~'12.5 월〉, IBK 증권 사외이사〈'09.6 월~'10.5 월〉,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(사장)〈'03.6 월~'07.5 월〉, 한국투자신탁 대표

				이사<'00.5 월~'03.5 월>, 신 공항 고속도로 대표이사<'00.3 월~'00.5 월>, 삼성증권 리테일 영업 총괄 부사장<'99.2 월~'00.2 월>, 삼성증권 상품법인 및 기업금융본부 부장<'96.1 월~'99.1 월>,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<'92.11 월~'95.12 월>, 삼성중공업 경영기획실장<'91.3 월~'92.11 월>,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감사팀장<'78.11 월~'91.2 월>
최현만	이사	사내이사	유	생략 (하단 표에 기재)

[미래에셋대우 2017년 3월 24일 ~ 12월 31일]

성명	직명	사외이사 여부	금융회사 등 출신여부	약력
황건호	이사	사외이사	유	KB 금융지주 사외이사<'12.3 월~'15.3 월>,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<'12.3 월~'14.2 월>,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<'09.2 월~'12.2 월>, 한국증권업협회 회장<'04.2 월~'09.1 월>, 메리츠증권(주) 대표이사(사장) <'99.10 월~'03.12 월>, 대우증권(주) 부사장 <'96.3 월~'99.9 월>
김병일	이사	사외이사	무	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교수 <'07~>,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위원회 위원<'14~'15>,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<'08~'09>, (주)대현 상임감사 <'99~'07>, 재정경제원 서기관 <'95~'99>
최현만	이사	사내이사	유	미래에셋대우(주)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<'17~>, 미래에셋생명(주) 대표이사 수석부회장<'12~'16>, 미래에셋증권(주) 대표이사 <'99~'12>,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<'97~'99>

## 2) 구성원

성명	상임/사외/ 비상임	직위	선임일 <sup>주 1)</sup>	임기 만료일
황건호	사외	위원	16.3.25	18.3.16
김병일	사외	위원장	16.2.3	18.3.16
최현만	사내	위원	16.11.4	18.3.16

주 1)최초 선임일 기준

## 다. 권한과 책임

### 1) 총괄

「보수위원회규정」에 의거 하여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

다만,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
### 2)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

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7 년 4 월 28 일 개최된 2017 년 제 2 차 보수위원회에서 2017 년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심의·의결 하였고, 2018

년 1 월 31 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2017 년 성과보수 지급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.

### 3)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

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7 년 3 월 3 일 개최된 2017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.

### 4) 보수체계의 설계·운영 및 그 설계·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

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7 년 4 월 28 일 개최된 2017 년 제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.

임원,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정의와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 비율, 이연지급기간, 이연지급액환수 등 보수체계의 설계·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심의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사업연도 성과보수 총액의 50%를 이연지급 하며, 이연기간을 3 년으로 하였습니다.

### 5)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·의결

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7 년 4 월 28 일 개최된 2017 년 제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.

**6)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**

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8년 1월 31일 개최된 2018년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.

2017년도에 대한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 규모 및 자본의 규모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임을 확인하였으며,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**7)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 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**

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7년 3월 3일 개최된 2017년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.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,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**8)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**

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은 한국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내 모든 조직

**9) 임원,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제 44 조에 따른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**

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17년 4월 28일 개최된 2017년 제 2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수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.

[미래에셋대우, 2017년 12월말 기준]

분류	인원수	직명
임원	134명	대표이사, 부문대표 등
금융투자업무담당자	62명	운용 및 IB 부문 인력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, 2016년 12월말 기준]

분류	인원수	직명
임원	67명	대표이사, 부문대표 등
금융투자업무담당자	29명	운용 및 IB 부문 인력

[舊미래에셋증권, 2016년 12월말 기준]

분류	인원수	직명
임원	94명	대표이사, 부문대표 등
금융투자업무담당자	166명	운용 및 IB 부문 인력

## 10) 기타

해당사항 없음



## 라.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

### 1) 의사결정 절차

보수위원회는 위원장(현재 황건호 이사)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, 회의일 3 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7 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.

### 2) 활동내역 개요

2017 년에는 총 2 회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. 3 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성과보수 및 이연대상자를 결정하였고, 성과보수 집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, 미래에셋대우의 성과보수제도가 회사의 재무상황,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는지 평가 하였습니다.

### 3) 회의 개최내역

가) 제 2017 년도 제 1 차 보수위원회 : 2017 년 3 월 3 일(금) 오후 02 시 00 분

[안건 통지일 : 2017 년 2 월 28 일(화)]

항목	위원별 활동내역				가결 여부
1. 위원 성명	김병일	황건호	홍성일	최현만	-
2. 참석여부 및 (불참)사유	참석	참석	참석	참석	-
3.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<sup>1)</sup>	특이사항 없음				-

4. 의결안건

2016 년 舊미래에셋대우 등 기임원 성과보수 지급(案)	동의	동의	동의	동의	가결
2016 년 舊미래에셋대우 주 요직책자 성과보수 지급(案)	동의	동의	동의	동의	가결
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	동의	동의	동의	동의	가결

1) 보고안건 : 2016 년 성과보상 지급 보고

나) 제 2017 년도 제 2 차 보수위원회 : 2017 년 4 월 28 일(금) 오후 05 시 40 분

[안건 통지일 : 2017 년 4 월 25 일(화)]

항목	위원별 활동내역			가결여부
	황건호	김병일	최현만	
1. 위원 성명	황건호	김병일	최현만	-
2. 참석여부 및 (불참)사유	참석	참석	참석	-
3.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	해당사항 없음			-
4. 의결안건				
2017 년 성과보수 지급기준 (案)	동의	동의	동의	가결

4) 평가

해당사항 없음

## 2. 보수체계

### 가. 주요사항

#### 1)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

##### 가)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

당사는 수익, 손익 영업목표 달성률 등 정량항목과 시장상황, 경쟁사 실적, 총위험액 대비 수익률 등 정성항목을 주요 성과측정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, 성과측정 지표에 따른 결과를 부서/개인별 상여율에 연동시켜 성과측정과 보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.

##### 나)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

임원의 경우 담당조직별 조직평가(담당 부문/본부 목표달성·평가등급 반영)를 적용하였으며, 직원의 경우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하여 업적평가(수행한 업적 기술), 역량평가(기본역량, 직무역량, 정책역량)의 두 가지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##### 다)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

임원은 회사의 경영실적과 조직성과보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규모를 결정하고, 담당조직(사업부문/본부)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.

직원의 경우 각 조직별 손익을 기준으로 조직의 성과보상 재원을 결정한 후, 상기 명시된 개인 평가결과를 반영한 기여도에 따라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.

## 2)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, 환수, 지급확정 기준

가)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

성과보수액 중 50%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, 나머지는 현금 및 주식 등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.

나)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

법령이나 규정,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연된 성과보수액을 차감 및 환수 할 수 있습니다. 한편, 그 사유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보수위원회에 상정하여 차감 및 환수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다)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

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확정되며,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. 다만,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.

## 3)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

가)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

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,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나) 성과보수의 지급형태(현금, 주식, 주식연계상품 등)

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 및 주식 등(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)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

다)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 
성과보수액 중 이연하지 않고 즉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고, 이연되는 금액은 주식 등(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)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.

라)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 
이연대상자의 경우 성과보수 총액의 50%는 당해년도에(T 년) 현금으로 즉시지급하고, 나머지 50%는 주식 등(주가를 반영한 현금 포함)으로 3년간 이연지급됩니다.

#### 4) 일반직원의 보수체계

가)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

미래에셋대우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일반직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 나) 임금체계의 합리화

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 손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## 5)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

2017년 보수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사안이 없었습니다.

## 6)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

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.

## 7)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

미래에셋대우는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 시행에 의거하여 이연제도 적용 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.

나. 보수 세부사항

1) 임직원 총보수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임직원 보수총액 (A)	법인세차감전순이익(B)		임직원수 (C)	임직원 평균보수 (A/C)
		비율 (A/B)			
당해년도 (2017년)	4,355.7	6,647.5	0.66	4,659	0.9

주 1) 임직원보수총액(A)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 
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
- 당해년도 : 2017.01~2017.12

주 2) 법인세차감전순이익(B)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

- 당해년도 : 2017.01~2017.12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임직원 보수총액 (A)	법인세차감전순이익(B)		임직원수 (C)	임직원 평균보수 (A/C)
		비율 (A/B)			
전년도 (2016년)	2,993.3	1,200.1	2.49	2,903	1.03

주 1) 임직원보수총액(A)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 
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
- 전년도 : 2016.01~2016.12

주 2) 법인세차감전순이익(B)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

- 전년도 : 2016.01~2016.12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임직원 보수총액 (A)	법인세차감전순이익(B)		임직원수 (C)	임직원 평균보수 (A/C)
			비율 (A/B)		
전년도 (2016년)	1,521.0	209.4	7.26	1,791	0.8

- 주 1) 임직원보수총액(A)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
 - 전년도 : 2016.01~2016.12
- 주 2) 법인세차감전순이익(B)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  
 - 전년도 : 2016.01~2016.12(합병 미래에셋대우 손익)

2)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임원	직원				
			수석 매니저	선임 매니저	매니저	대리	사원
당해도 (2017년)	보수총액	356.7	1,251.9	1,565.6	493.9	458.1	185.9
	성과보수액	175.6	302.5	408.5	132.9	61.5	40.1

- 주 1) 작성기준 :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

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임원	직원				
			부장	차장	과장	대리	사원
전년도	보수총액	259.4	335.0	790.3	535.0	375.2	449.1
(2016년)	성과보수액	92.3	92.2	136.7	96.7	60.3	99.4

주 1) 작성기준 :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

주 2) 작성기준 : 임원(이사이상), 사원(상담역, 기타, 다이렉트 포함)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임원	직원				
			부장	차장	과장	대리	사원
전년도	보수총액	259.2	276.3	249.6	300.8	293.2	127.7
(2016년)	성과보수액	118.0	70.2	56.6	60.2	46.8	14.3

주 1) 작성기준 :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

주 2) 보수총액: 급여(1월~12월)실지급여액 + 성과보수(회계연도에 결정된 성과급)

다.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

1) 보수의 구분(해당년도 발생액 기준)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수급자수 <sup>주 1)</sup>	기본급 <sup>주 2)</sup>	성과보수액 <sup>주 3)</sup>		
				이연지급대상	
당해년도 (2017년)	임원	134	180.3	270.8	135.3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62	28.8	119.9	59.9

주 1) 해당년도중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

주 2)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(수당,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)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'기본급'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'성과보수액'으로 분류

주 3) 당해년도 : '17.1월 ~ 12월(이하 동일)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수급자수 <sup>주 1)</sup>	기본급 <sup>주 2)</sup>	성과보수액 <sup>주 3)</sup>		
				이연지급대상	
전년도 (2016년)	임원	67.0	111.7	36.0	17.2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29.0	28.4	45.0	23.0

주 1)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경영진·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

주 2)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(수당,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)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'기본급' 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'성과보수액' 으로 분류

주 3) 전년도 : '16.1 월 ~ 12 월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수급자수 <sup>주 1)</sup>	기본급 <sup>주 2)</sup>	성과보수액 <sup>주 3)</sup>		
			이연지급대상		
전년도 (2016 년)	임원	94	123.5	96.1	17.1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166	109.9	78.1	10.1

## 2) 성과보수의 형태(해당년도 발생액 기준)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억원)

구분	성과보수액	성과보수액			
		현금	주식 <sup>주 1)</sup>	주식연계 상품 <sup>주 2)</sup>	기타
당해년도 (2017 년)	임원	270.8	135.5	135.3	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119.9	59.9	59.9	

주 1) 주식 : 2017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

주 2) 주식연계상품 : 주식으로 이연되는 성과급의 합계액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성과보수액				
		현금	주식 <sup>주 1)</sup>	주식연계 상품 <sup>주 2)</sup>	기타	
전년도 (2016년)	임원	36.0	18.6	17.3		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45.0	24.3	20.7		

주 1) 주식 :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(종가)로 평가하여 산정하며,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(예: 외부평가기관 2 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)으로 평가하여 산정.

주 2) 주식연계상품 : 상기 주 1)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. (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)

주 3) 주 2)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'주식' 또는 '주식연계상품' 으로 기재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성과보수액				
		현금	주식 <sup>주 1)</sup>	주식연계 상품 <sup>주 2)</sup>	기타	
전년도 (2016년)	임원	96.1	79.0	17.1		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78.1	78.1			

주 1) 주식 : 2016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

주 2) 주식연계상품: 주식으로 이연되는 성과급의 합계액

3)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(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)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
			지급확정	지급미확정
당해년도 (2017년)	임원	244.0	58.6	185.4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130.9	29.7	101.2

주 1) 이연보수액 :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

주 2)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'지급확정' 으로, 미확정된 경우 '지급미확정' 으로 구분 기재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
			지급확정	지급미확정
전년도 (2016년)	임원	84.5	24.7	59.7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130.5	51.0	79.6

주 1) 이연보수액 :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

주 2)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'지급확정' 으로, 미확정된 경우 '지급미확정' 으로 구분 기재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
			지급확정	지급미확정
전년도 (2016년)	임원	32.5		32.5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38.8		38.8

주 1) 이연보수액 :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금액

주 2) 해당연도 말 기준 누적된 금액 중 지급된 금액을 '지급확정' 으로 구분

4)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(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)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		
		현금	주식	주식연계상품	기타	
당해년도 (2017년)	임원	244.0	2.7	33.1	208.1	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130.9	1.5	21.4	108.0	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		
		현금	주식	주식연계상품	기타	
전년도 (2016년)	임원	84.5	8.8	75.5		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130.53	32.35	98.18		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		
		현금	주식	주식연계상품	기타	
전년도 (2016년)	임원	32.5			32.5	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38.8	38.8			

5)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(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)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			
		t 기	t-1 기	t-2 기	t-3 기	이전	
당해년도 (2017년)	임원	244.0	135.3	42.1	52.7	13.9	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130.9	59.9	23.2	39.5	8.2	

주)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

[예시 : '17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'17 년(t 기) 발생분, '16 년(t-1 기) 발생분, '15 년(t-2 기), '14 년(t-3 기) 발생분 등으로 구분]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			이전
		t 기	t-1 기	t-2 기	t-3 기		
전년도 (2016 년)	임원	84.5	18.4	53.1	10.8	2.2	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130.53	45.03	69.37	14.11	2.03	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					이전
		t 기	t-1 기	t-2 기	t-3 기		
전년도 (2016 년)	임원	32.5	19.2	9.3	4.0	-	-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38.8	19.4	12.5	6.9	-	-

주)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

[예시 : '16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'16 년(t 기) 발생분, '15 년(t-1 기) 발생분, '14 년(t-2 기) 발생분 등으로 구분]



## 6) 이연보수의 성과조정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 축소액 <sup>주 1)</sup>			직·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
			직접적 조정 <sup>주 2)</sup>	간접적 조정 <sup>주 3)</sup>	
당해년도 (2017 년)	임원	-	-	-	244.0
	금융투자	-	-	-	130.9
	업무담당자	-	-	-	

주 1)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주가변동,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, 다만,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,

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

주 2)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

주 3)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 축소액 <sup>주 1)</sup>			직·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<sup>주 4)</sup>
			직접적 조정 <sup>주 2)</sup>	간접적 조정 <sup>주 3)</sup>	
전년도 (2016 년)	임원	14.7		14.7	14.7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27.6	2.9	0.4	27.6

주 1)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주가변동,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, 다만,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,

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

주 2)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

주 3)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억원)

구분		이연보수액 축소액 <sup>주 1)</sup>			직·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<sup>주 4)</sup>
			직접적 조정 <sup>주 2)</sup>	간접적 조정 <sup>주 3)</sup>	
전년도 (2016 년)	임원	3.1	-	3.1	3.1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23.7	23.7	-	23.7

주 1) 미래에셋대우 이연 성과급 지급 시 주가 변동으로(이연시기보다 지급시기 주가가 상승) 이연보수액이 확대되어 -로 표기함

## 7)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

[미래에셋대우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	수급자수	퇴직보수액	1인 기준 최고 지급액
당해년도 (2017 년)	임원	-	-	-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-	-	-

[미래에셋대우(합병전)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	수급자수	퇴직보수액	1인 기준 최고 지급액
전년도 (2016년)	임원	-	-	-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-	-	-

[舊 미래에셋증권]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	수급자수	퇴직보수액	1인 기준 최고 지급액
전년도 (2016년)	임원	-	-	-
	금융투자 업무담당자	-	-	-

주)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